

2017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2492호, 제2493호, 제2494호

다. 제출일자 : 2018.05.31.

라. 회부일자 : 2018.06.11.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3. 결산개요

#### 가.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7	17,161	17,161	22,014	18,676	3,338	41	3,296	84.8

- 세입예산현액은 171억 61백만원이었으나 실제 220억 1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86억 76백만원을 수납하고, 33억 38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4천 1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2억 9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4.8%임.

##### 2) 세출결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227,684	41,537	0	414 (-414)		-	269,221	231,129	27,184	8,694	18,490	10,908 (4.1%)

- 예산액 2,276억 8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15억 3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692억 21백만원으로, 이 중 85.9%인 2,311억 29백만원을 지출하고 10.1%인 271억 8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109억 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2건에 4억 14백만원으로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3억 35백만원
  - 관악산저류조 설치                        7천 9백만원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86억 9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692억 21백만원 대비 3.2%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184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임.

###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09억 8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2,692억 21백만원 대비 4.1%에 해당하는 규모임.

###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7	269,221	10,908	4.1	

- 발생원인별 내역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58억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50억 17백만원
- 예산절감(유보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 9천 1백만원

##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7	4,200	-	4,200	4,200	4,200	-	-	-	100.0

- 예산현액은 42억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임

### 2) 세출결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71,940	14,916	-	1,054 (-1,054)		-	86,856	72,272	11,901		11,901	2,683 (3.1%)

- 예산액은 719억 40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22억 72백만원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26억 8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2건에 10억 54백만원으로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7억원
  -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 3억 54백만원 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 중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15건에 119억 1백만원임

###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6억 8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68억 56백만원 대비 3.1%임.

###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7	86,856	2,683	3.1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6억 14백만원
- 예산절감(유보액) : 3백만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20억 65백만원

## 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2017	791,041	73,804	864,845	911,802	893,960	17,842	400	17,442	98.1

- 예산현액은 8,648억 45백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사업수입 등 정상적세외수입이 6,773억 94백만원, 부담금 및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553억 42백만원, 국고보조금이 3,37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87억 37백만원임.

수납액은 8,939억 60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118억 2백만원 대비 98%이며, 미수납액은 178억 4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0%임.

### 2) 세출결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791,041	73,804	-	1,246 (-1,246)	3,000 (-3,000)	-	864,845	672,212				192,633 (22.3%)

- 당초예산액 7,910억 4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38억 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648억 45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722억 12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3%인 1,926억 33백만원에 해당함.

###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2건에 30억원으로
- 인력운영비 35만원
-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30억원

- 이체 : 해당없음

-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6건에 12억 46백만원으로
- 오류4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4천 9백만원
-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2억 55백만원
-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3억 92백만원
- 차집관로 성능개선 5천만원
-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5억원

- 예비비 : 해당없음



####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없습니다.

####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926억 3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648억 45백만원 대비 22.3%임.

###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17	864,845	192,633	22.3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776억 98백만원
- 예산절감(유보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 143억 34백만원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 999억 1백만원
- 예비비 : 7억

## 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2017	28,594	1,151	29,745	29,579	29,579	-	-	-	100.0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295억 79백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정상적세외수입이 2억 2백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258억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이 35억 3천만원이며, 수납액은 295억 7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 2) 세출결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28,594	1,151	-		7 (-7)	-	29,745	24,600	1,868		1,868	3,277 (11.0%)

- 예산액은 285억 94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46억원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0%인 32억 7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2건에 7백만원으로
  - 인력운영비임
- 변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 중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1건에 18억 6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97억 45백만원 대비 6.3%임.

###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2억 7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97억 45백만원 대비 11.0%임.

##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17	29,745	3,277	11.0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2억 23백만원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 6천 2백만원
- 보조금 집행 잔액 : 6억 6천만원
- 예비비 : 13억 33백만원

## 마.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 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 금	예탁 금	예수금 상환	기타	다음 연도 이월 액
2017	415,089	191	100,500	2,174	6,166	259,297	46,666	95	415,089	23,239	389,806			4	2,040
2016	299,777	104	90,707	4	4,369	194,526	10,000	67	299,777	40,285	259,297	-	-	4	191
2015	236,962	3,636	86,532	17	4,418	132,359	10,000		236,963	42,333	194,526	-	-	-	104

-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1억 91백만원과 전입금 1,005억, 융자금회수 21억 74백만원, 이자수입 61억 66백만원, 예치금회수 2,592억 97백만원, 예탁금원금회수 466억 66백만원, 기타수입 9천 5백만원을 합한 4,150억 89백만원이며, 이 중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기본경비 등으로 기금총액의 5.6%인 232억 43백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 3,898억 6백만원, 다음연도로 20억 4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4. 검토 의견

### 가. 일반회계

#### 1) 세입 결산

####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2017	17,161	17,161	22,014	18,676	3,338	41	3,296	84.8
2016	19,946	19,946	25,203	21,700	3,503	249	3,254	86.1
2015	24,613	24,613	30,805	25,508	5,297	668	4,628	82.8

####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171억 61백만원이었으나 실제 220억 1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86억 76백만원을 수납하고, 33억 38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4천 1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2억 96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4.8%임.

#### 나) 세수추계(결산서 p.16~17, p.24)

- 금회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28.3%로 총 48억 53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6년 결산당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52억 57백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수추계의 정확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세입 중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낮은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사 유
임시적 세외수입					
하천사용료	2,315	1,298	1,277	-1,017	· 점용료 부과기준 착오로 과년도 반환액 440백만원 발생 · 용도폐지로 하천점용료 징수면적 감소
그외수입	1,842	4,418	2,089	2,576	· 분쟁조정 해결에 따라 광명시의 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분담금 미수납액 18억 징수 · 서울대버들골 및 공대폭포저류조 분담금 2억, 청계천위탁관리비 2억2천이 각각 추가 납부됨
지난연도수입	141	3,253	66	3,112	· 과년도 체납분으로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 기준 편성

- 경상적 세외수입 중 ‘하천사용료’는 세입예산액 23억 15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2억 98백만원으로 약 10억 17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점용료 부과기준 착오에 따른 과년도 반환액과 용도폐지(388㎡) 및 도시개발 등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140,853㎡)에 따라 하천점용료 징수면적 감소에 따른 것임.
- 이 중 점용료 부과기준 착오에 따른 과년도 반환액은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2조에 따라 관로 등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의 2.5/100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일부구청(영등포(2억 15백만원), 구로(1억 65백만원), 동대문(3천만원))이 하천구역내에 점용된 관로에 대해서 하천토지 공시지가로 부과해야할 점용료를 인근 토지가격(도로,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더 많은 점용료를 납부한 관로매설(한국가스공사) 업체에 환불조치 함으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 추후 점용료 착오부과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자치구 담당자의 상시 교육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액 18억 42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44억 18백만원으로 약 25억 76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이는 당초 세수추계에 계상하지 못했던 광명시와의 분쟁조정 해결에 따른 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 사업분담금 18억원을 징수하고, 서울대 버들골 및 공대폭포 저류조 시설 공사비의 서울대 부담금 2억원이 추가적으로 납부되었으며, 인건비 절감 노력 및 동력비 등 경비절감을 통해 2016회계연도 청계천 위탁관리비 반납액이 세입추계 대비 2억 2천여만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 다음으로,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예산액 1억 41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32억 53백만원으로 약 31억 1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반해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을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른 것이나, 예산편성과 배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미수납액 (결산서 p.16~17, p.24, p.265)**

-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33억 38백만원이며, 미수납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 32억 96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차년도 이월액	32억 96백만원
- 하천사용료	2천 1백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천 1백만원
- 시·도비반환금수입	5백만원
- 그외수입	5천 3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31억 46백만원

○ 이 중 ‘지난연도수입(소송비용 과년도 체납액 등)’이 31억 46백만원으로 전체이월액의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되는 소송비용 등의 고질적 장기 체납에 따른 것으로,

-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 32억 53백만원 중 실제수납은 2%인 6천 5백만원 수준임을 감안 할 때 초기에 징수하지 못하여 체납될 경우 징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초기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함과 동시에, 담당자가 고질적 장기 체납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적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인센티브 부여 등)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겨짐.

○ 또한, 다음 [표]에서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손처분 내역의 경우 시효소멸<sup>1)</sup>이 4천 1백만원으로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차년도 이월액의 경우 32억 54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시효소멸의 경우 결손처분하기에 앞서 독촉 및 압류 등 시효정지나 시효중단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1) 시효소멸의 법적근거(「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압류는 시효중단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등 압류가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조사하여 압류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미수납액의 차년도 이월액 중 대부분은 “납세태만(16억 24백만원)”과 “행방불명(13억 32백만원)”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항목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표]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3,324,869
	결손처분	41,371
	시효소멸	41,371
	차년도 이월액	3,283,498
	무재산	151,342
	행방불명	1,332,614
	납세태만	1,624,070
	소송계류	5,790
	국외이주	12,791
	자금압박	856
	기타	156,035

## 2) 세 출 결 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227,684	41,537	0	414 (-414)		-	269,221	231,129	27,184	8,694	18,490	10,908 (4.1%)
2016	221,440	72,093	1,455	439 (-439)			294,988	245,278	41,537	30,304	11,233	8,173 (2.8%)
2015	243,832	63,447	-	300 (-300)	-	-	307,279	220,669	72,092	59,430	12,662	14,518 (4.7%)

####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2,276억 8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15억 3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692억 21백만원임.  
이 중 85.9%인 2,311억 29백만원을 지출하고 14.1%인 271억 8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109억 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50~60, p.82~110)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109억 8백만원이며, 불용율 30% 이상(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등 16건([표] 참고)에 해당함.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물순환정책과	가뭄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	145	64	81	56.0%
2	하천관리과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5,996	424	2,072	34.6%
3	하천관리과	관악산저류조 설치	7,775	6,210	1,565	20.1%
4	하천관리과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4,039	2,960	1,078	26.7%
5	하천관리과	정밀안전진단(빗물펌프장, 수문등 용역)	3,274	2,897	377	11.5%
6	하천관리과	광장동 빗물펌프장 용역비	76	-	76	100.0%
7	하천관리과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	40	11	29	72.5%
8	하천관리과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	7	3	30.0%
9	하천관리과	하천사용료징수포상금	5	2	2	40.0%
10	하천관리과	하천 편입토지 보상	451	107	344	76.3%
11	하천관리과	광나루터(광진구) 주변 수변무대 설치	2,000	-	2,000	100.0%
12	하천관리과	도림천 복개 및 반복개 친수공간 조성 용역	150	95	55	36.7%
13	하천관리과	발산빗물저류조 개선(복개) 사업	100	1	42	42.0%
14	하천관리과	신길 유수지 현대화 사업	100	55	45	45.0%
15	하천관리과	중랑천(동대문구) 축구장 조성	70	-	70	100.0%
16	하천관리과	중랑천(광진구) 물놀이장 조성 사업	100	-	100	100.0%

○ 이 중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은 사당동 일대 저지대 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저류조 2개소(까치, 희망), 관거개선 1.1km, 게이트펌프 4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59억 96백만원 중 34.6%인 20억 7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까치어린이공원 빗물저류조 착공 후 (2017.12.01.) 주변지역 주민들의 공사반대 집단민원(지역 주민 781명 공사중지 요구)이 발생(2017.12.06.)됨에 따라 주민설득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취했으나 현시점에서는 민원해소가 불가하다는 결론으로,

- 까치어린이공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용역 포함)를 타절 준공 처리하고,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체 침수피해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서울시는 사업 추진 전 2015년 5월, 2016년 5월 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고, 시공업체 선정 후에도 주민설명회 및 주민면담(3회)를 거쳤다는 입장이나,
  - 착공 후 5일 후 바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 민원발생 후 추진된 모든 면담에서 공사반대가 확고했다는 점을 살펴볼 때, 사업 추진 전 주민의견 수렴이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후 이와 같이 형식적 절차의 주민의견 수렴으로 사업이 중지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주민설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관악산저류조 설치’,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집중호우시 신림3교~충무교 일대, 서초구 양재2동 양재근린공원 주변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저감·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 관악산저류조의 경우 예산현액 77억 75백만원 중 20.1%인 15억 65백만원이, 양재근린공원의 경우 예산현액 40억 39백만원 중 26.7%인 10억 78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임.
  - 동 사업들의 경우 준공정산 잔액이 각각 15억 65백만원, 10억

78백만원에 달하여 설계가 다소 과다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신규사업의 경우 설계의 정확도를 높여 최종 준공정산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광장동 빗물펌프장 용역비’는 여름철 강우시에만 활용하는 광장유수지를 다목적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7천 6백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그 사유는 서울시가 광장동 일대 체육시설부지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수립을 위해 시 체육정책과와 공공개발센터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른 것인데,

- 이는 연계된 선행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선행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후속사업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광나루터(광진구) 주변 수변무대 설치’는 광나루터 주변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과적인 문화공간 및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금회 예산현액 20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서울시는 당초 수변무대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로 계획했으나 환경유역환경청과의 설치장소 적정성에 대해 논의(2016.6.22.)한 결과 공공목적에 적합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전달되었고, 이에 둔치 및 제방사면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꾀하였으나, 대체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입장임.

- 동 사업은 전년도에 당해연도로 2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2016.6월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명시이월을 결정함에 따라 20억원이 전액 불용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사료되는 바, 명시이월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민과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 ‘중랑천(동대문구) 축구장 조성’은 중랑천 축구장 조성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7천만원 전액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2017년도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동대문구는 당초 중랑천 1체육공원에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축구장 폭(39M 이상) 확보가 불가하고,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하여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며, 중랑천 범람에 따른 인조잔디 조성이 불가하다는 점을 사유로 휘경유수지<sup>2)</sup>, 한강변 유희지<sup>3)</sup> 등의 대체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이 역시 각각 축구장 조성이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2) 공영주차장, 청소차고지, 견인차보관소 등 기존시설 대체부지 확보 불가

3) 동대문구와 약 20km 거리에 위치, 접근성 미흡(주말 이용 시 약 40분 내외 소요)

-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편성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나 한정된 예산심사 기간 내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 서울시는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 신속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검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들 사업들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 ‘중랑천(광진구) 물놀이장 조성 사업’은 중랑천에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여름철 중랑천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1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서울시는 광진구가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이와 매칭할 수 있도록 시비를 반영해달라는 요청에 국비로 우선 2018년도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익년에 시비확보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했으나, 2017년도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비 1억원이 반영되었다는 설명임.
  - 그러나 확보된 국비 10억원이 광진구 물놀이장 설치공사 예산이 아닌 타사업비라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시비만 가지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 확보 후 허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불용함.

- 해당 사업의 국비 지원 여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음.

#### 다) 예산전용<sup>4)</sup>

- 예산의 전용사용은 없음.

#### 라)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없음.

#### 마) 예산변경<sup>5)</sup>(결산서 p.178)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에 4억 14백만원으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외 1건으로 시설비를 감액하여 동 사업들의 감리비에 융통하여 사용한 것으로,

---

4)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5)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표] 예산 변경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2건			14,055	414	414		
하천 관리과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	401-01 시설비	6,530	335		2017.10.1 8	감리비 사용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	401-02 감리비	270		335		
하천 관리과	관악산 저류 조 설치	401-01 시설비	6,916	79		2017.8.10	감리비 추가 재배정
	관악산 저류 조 설치	401-02 감리비	339		79		

- 이는 해당사업의 사업기간 변경<sup>6)</sup>으로 감리원 배치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부족한 감리비 예산을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상호 융통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임.
- 이처럼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초기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바) 예비비(결산서 p.181)**

- 예산의 예비비 집행은 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384~385)**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184억 9천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2,692억 2천만원 대비 6.9%에 해당하며,
- 사유별 현황([표] 참고)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전절차 및 유

6)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 (당초) 2016.4.11.~2017.12.31. → (변경) 2016.4.11.~2018.5.30.  
관악산 저류조 설치 (당초) 2012.1.6.~2017.6.15. → (변경) 2012.1.6.~2017.7.31.

관사업 지연 9건에 43억 9백만원,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1건에 19억 97백만원,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1건에 2억 3천만원, 본공사 및 용역지연 6건 46억 97백만원 등 총 17건(112억 33백만원)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함.

[표]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 유 별	2017	
	건수	이월액
사전절차 및 유관사업 지연	6	4,689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1	112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2	720
본공사 및 용역지연	13	12,969
계	22	18,490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사고이월 30%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이 월액	집행 잔액	이월 률	사유
14건							
1	물순환 정책과	서울형 물순환 협력 협업 통합메뉴얼구축	700	600	6	85.7%	본공사 용역지연 및 계약 변경
2	하천관 리과	서울시립대학교 빗물 저류조 설치	1,000	663	-	66.3%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관 련기관 협의 및 재설계 등으로 인하여 연내 완료 에는 절대공기 부족
3	하천관 리과	청계천 개선보완 사 업	1,741	743	-	42.7%	o 백운동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 교통 및 문화 재 심의에 따른 사전절차 준비로 설계가 지연, 수표 교 추가과업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발생 o 청계천 생태환경개선공 사 : 수방기간(5.15 ~ 10.15)동안 하상공사 추 진 불가함에 따른 공사지 연
4	하천관 리과	생태하천 조성 시범 사업 기본 및 실시설 계	1,100	588	260	53.5%	o 계 약 기 간 이 '17.8.9.~'18.12.31. 으로 지출 원인행위액 중 미지출액 사 고이월 필요 - 사업 대상하천을 (성 내천, 목감천)에서 (성내 천,목동천)으로 변경하면 서 발주 지연 - 목감천은 우안 관리청 인 경기도(광명시)와 조 성방안 및 사업비 분담 협의 등이 어려울 것으 로 예상되어 목동천으로 변경 - 4월 발주계획(대상하 천 변경) 수립, 6월 발 주, 8월 계약 및 착수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이 월액	집행 잔액	이월 률	사 유
5	하천관 리과	우이천(강북구) 신우연 립앞교 재설치사업	2,963	2,625	-	88.6%	실시설계 완료 후 2개구에 걸친 교량 재가설에 따른 지 역주민 설명회와 발주전 사 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발 주지연
6	하천관 리과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1,800	1,278	22	71.0%	기본계획 용역 2차분(최 종) 준공기한(2018.4)이 미도래, 기본계획 용역과 시범사업 실시설계가 병 행 시행됨에 따른 실시설 계 지연('17.9월)으로 공 사발주가 지연
7	하천관 리과	우이천(도봉구) 쌍수 교 재설치 공사	2,400	1,256		52.3%	하천횡단 교량 설치 공사 로서 공사 착공시 우기도 래에 따른 공사중단을 감 안 18년 4월을 준공기한 으로 정함에 따른 절대공 기 부족으로 연내 미집행 액 사고이월
8	하천관 리과	인수천,백운천(소하 천,강북구) 정비공사	700	368	-	52.6%	소하천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도중 우이구곡 과 연계한 백운천 호안정 비 과업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기간 이 연장(당초 '17.6.24→ 변경 '17.8.7)됨에 따라 공사착공(10.23) 지연
9	하천관 리과	정릉천(성북구) 자전 거도로 조성 사업	250	132	5	52.8%	사업 방향 및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역이 지 연되어 2017.12. 공사착공 함에 따라 연내 완료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함

○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사업은 물순환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의

효과분석, 경제적 편익분석, 다분야 협력 매뉴얼구축 등을 통해 물순환 정책의 추진근거와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7억원 중 85.7%인 6억원을 사고이월함.

- 이는 2016.8월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강수량이 부족하여 모니터링 여건이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1차년도 준공기한을 당초 2016.12월에서 2017.8월로 연기함에 따른 것임.
- ‘서울시립대학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는 2011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휘경동 일대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10억원 중 66.3%인 6억 63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가시설 CIP천공선 및 본구조물에 휘경유치원 L형옹벽 저판이 저축되어 이에 대한 설계사 재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추진코자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당해년도 확보된 공사비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사고이월하였다는 입장임.
  - 건설공사의 특성상 지하상태에 따라 일부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되나, 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제 지하구조물 세부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성급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음.
  - 추후 설계용역 시에는 현장조사, 특히 지하 지장물 조사를 철

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용역사업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청계천 개선보완 사업’은 서울시민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는 청계천의 역사성 및 자연생태성을 회복시켜 생태문화가 복합된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17억 41백만원 중 42.7%인 7억 43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 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문화재 현상변경, 차로축소에 따른 교통관련 심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기간(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용역이 지연되었고,
  - 이에 서울시는 하천 특성상 하상 공사(하상차수제 시범천공 및 식생방틀 시공 등)는 수방기간(5. 15. ~ 10. 15.) 이후 공사 착공이 가능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을 연기<sup>7)</sup>하였다는 설명인데,
  -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사전에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신중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하천 2개소를 시범적으로 종합적·체계적 관리 및 자연친화적 시민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11억원 중 53.5%인 5억 88백만원을 사고이월함.

7) 당초 2016. 7. 20 ~ 2017. 7. 19, 변경 2016. 7. 20 ~ 2018. 1. 19

- 이는 당초 대상지인 목감천(3.65km), 성내천(0.6km) 중 목감천이 우안 관리청인 광명시와 2011.7월 발생한 목감천변 침수 원인 관련 분쟁(2016.3.~2017.6.)이 있어 생태하천 조성방안 및 사업비 분담 협의 등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상지를 목동천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발주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것임.
- 이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사전에 필요한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은 단적사례라 하겠음.
- ‘우이천(강북구) 신우연립앞교 재설치사업’은 신우연립앞 교량이 계획홍수위 이하로, 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 등 치수적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중호우 발생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금회 예산현액 29억 63백만원 중 88.6%인 26억 2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 그 사유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2개구에 걸친 교량 재가설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와 발주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발주지연으로 연내 미집행액을 사고이월한 것임.
  - 이는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성급한 사업추진 보다는 사전절차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소요 공사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 복원 기본계획 용역’ 사업은

세검정 일대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역사와 문화적 스토리텔링을 찾아내어 도시문화 재생을 통한 도심 속 명소 홍제천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원 중 71%인 12억 78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그 사유는 기본계획 용역과 시범사업 실시설계가 병행 시행됨에 따라 실시설계가 지연(2017.9월 완료)되었고, 이로 인해 공사발주가 늦어져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연내 미집행액에 대해 사고이월됨.
  - 이는 공사 전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선행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후속사업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다 하겠음.
- ‘우이천(도봉구) 쌍수교 재설치 공사’ 사업은 계획홍수위가 부족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24억원 중 52.3%인 12억 56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당초 본 공사는 2017.4월에 착공하였으나 하천공사인 관계로 착공 후 우기철이 도래하여 수해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본 공사 구간이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학기 중에 공사중단 집단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학교, 학부모, 교회, 주민 등에게 설득하여 기존 교량은 철거 완료 하였고 다만, 당해연도 준공이 어려워 폐기물 처리용역, 관급자재 등 관련 사업비를 사고이월함.



- 이는 설계과정에서 주변 이해관계자 협의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사전조사와 함께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인수천, 백운천(소하천,강북구) 정비공사’ 사업은 인수천 및 백운천을 정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위해요소 제거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7억원 중 52.6%인 3억 68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이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중 우이구곡과 연계한 백운천 호안정비 과업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연장(당초 2017.6.24 → 변경 2017.8.7)됨에 따라 공사착공(2017.10.23.)이 지연되었고,
- 동절기 시공품질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6개월간의 공기를 감안할 때 당해년도내에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본 공사 도급비 및 조달구매 요청된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가 사고이월된 것임.
- 이처럼 당초 예산편성 시점에서 당해연도 수행가능 한 사업 범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과업을 추가함으로써 사고이월을 야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정릉천(성북구)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은 하천 내 노후 및 파손된 자전거 진입경사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2억 5천만원 중

52.8%인 1억 32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서울시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 정릉천 자전거로 설치공사 완공을 위해서는 10억 이상 사업예산이 소요되나 내년도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을 감안하여,
- 금년 확보된 사업비 중 실시설계용역비 집행 잔여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높은 일부구간이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하였고, 이에 2017.12월이 되어서야 공사가 착공되어 연내 완료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는 입장임.
- 이처럼 사업 도중에 사업방향과 노선이 변경된다는 것은 최초 사업계획이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초 의회승인 받은 사업내용과 상당부분 달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7	4,200	-	4,200	4,200	4,200	-	-	-	100.0

#### 가) 개요

- 금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2억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71,940	14,916	-	1,054 (-1,054)		-	86,856	72,272	11,901		11,901	2,683 (3.1%)

#### 가) 개요

- 예산액은 719억 4천만원으로 이 중 722억 72백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3.1%인 26억 83백만원을 불용함.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61~62, p.111~114)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868억 56백만원 대비 3.1%인 26억 83백만원이며, 불용률 30%(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곡(대치1)펌프장 신설’ 등 5건([표]참고)에 해당함.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하천관리과	합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3,441	3,024	417	12.1%
2	하천관리과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5,000	4,379	621	12.4%
3	하천관리과	도곡(대치1) 빗물펌프장 신설	13,357	12,547	809	6.1%
4	하천관리과	흑석펌프장 이전 타당성조사	247	22	174	70.4%
5	하천관리과	중곡빗물펌프장 외 3개소 배수시설 성능향상 용역	1,000	425	573	57.3%

- ‘합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및 ‘도곡(대치1) 빗물펌프장 신설’ 사업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등 치수 시설물 수방능력을 30년 빈도로 향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 합정의 경우 금회 예산현액 34억 41백만원 중 12.1%인 4억 17백만원, 잠원의 경우 예산현액 50억원 중 12.4%인 6억 21백만원을, 도곡의 경우 예산현액 133억 57백만원 중 6.1%인 8억 57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낙찰차액에 따른 것임.
  - 평균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10.2%(약 6억 31백만원)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상황을 감안할 때, 당초 설계가 다소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되므로 설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보임.

- ‘**흑석펌프장 이전 타당성 조사**’ 사업은 10년 빈도로 오래전에 설치(‘67년)되어 시설물 상태가 열악한 흑석펌프장을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기준인 30년 빈도로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2억 47백만원 중 70.4%인 1억 74백만원을 불용함.

- 그 사유는 동작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검증을 요청하였던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투자심사 제외로 반려(2017.5.12.)됨에 따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재의뢰하게 되어 검증비 1억 5천만원이 사용되지 않게된 것에 따른 것임.

- 이는 관련 절차 및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사업계획 수립 전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법규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중곡빗물펌프장의 3개소 배수시설 성능향상용역**’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등 치수 시설물의 수방능력을 30년 빈도로 향상시키기 위해 광진구 중곡동 내 빗물펌프장 4개소(중곡, 영등포, 신길, 증산)를 증설하는 것으로, 금회 예산현액 10억원 중 57.3%인 5억 73백만원을 불용함.

- 이는 증설 예정지역이 펌프장 증설만으로는 근본적인 침수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관저 확충, 경사 조정 등의 관저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2017.09.15.)을 수용함에 따라 해당 시점에서 간선관거 정비는 정비물량이 과다해졌고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 후순위 반영으로 즉시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 4개소 중 증산에 대해서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개소는 우선 기본설계 시행 후, 하수관거 정비 등 여건이 조성되면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과업범위를 조정(하천관리과-19464, 2017.12.15.)하게 되어 설계비가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임.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된 것은 인정되나 사업을 기획하는 초기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향후 신규사업 기획 시에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할 것임.

#### 다)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사용은 없음.

#### 라)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없음.

#### 마) 예산변경<sup>8)</sup>(결산서 p.179)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에 10억 54백만원으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 사업으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감리비를 시설비로 각각 융통해 주었음.

---

8)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표] 예산 변경사용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2건			26,375	1,054	1,054		
하천 관리과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21,620	700	-	2017.02.27	감리비 부족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	401-02 감리비	1,320	-	700		
하천 관리과	오류천(구로 구) 단면확장	401-02 감리비	664	354	-	2017.08.10	이설비 집행
	오류천(구로 구) 단면확장	401-01 시설비	2,771	-	354		

○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의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기간 변경<sup>9)</sup>으로 감리원 배치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부족한 감리비 예산을,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의 경우 도시가스, 통신관로, 배선선로 등의 이설비 집행을 위해 부족한 시설비 예산을, 각각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상호 융통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으로,

- 이처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전에 검토되지 못한 상황의 발생이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초기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9) (당초) 2013.01.07.~2017.02.22. → (변경) 2013.01.07.~2018.2.22.

바)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386)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15건에 119억 1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868억 56백만원 대비 13.7%에 해당됨.

[표] 사고이월 30%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1	하관과 천리	상수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900	1,273	-	67.0%	공사현장 주변 어린이집 학부모 민원발생 및 토출관로 부설을 위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지연으로 공사지연
2	하관과 천리	당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900	1,958	-	67.5%	당초 한국전력공사 중부변전소 부지 일부를 점용토록 설계되어 협의결과 345kV 초고압 전력케이블 등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부지점용 불가로 설계변경에 기간이 필요 등 공사지연되어 사고이월
3	하관과 천리	한남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800	1,615		57.7%	수방기간 중 기상변화에 따른 공사중지 및 관급자재 수급문제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지연되어 사고이월
4	하관과 천리	여의천(서초구) 단면확장 및 보축	1,000	992		99.2%	토지보상 감정평가 '17.12.18 완료되어 '18년 감정평가비용 및 토지보상비 집행을 위해서 사고이월
5	하관과 천리	새원천(소하천, 서초구) 하천정비(단면확장)	800	783	4	97.9%	○ 집행시기미도래(공사기간 : '17.11.30. ~ '18.11.29.) ○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절차이행, 보상 절차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으로 지연

- ‘상수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당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및 ‘한남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은 기상이



변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등 치수 시설물의 수방능력을 30년 빈도로 향상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상수의 경우 금회 예산현액 19억원 중 67.0%인 12억 73백만원을, 당인의 경우 예산현액 29억원 중 67.5%인 19억 53백만원을, 한남의 경우 예산현액 23억원 중 57.7%인 16억 15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상수 빗물펌프장의 경우 공사현장 주변 어린이집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고, 토출관로 부설을 위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한 것이고,
- 당인 빗물펌프장의 경우 당초 한국전력공사 중부변전소 부지 일부를 점용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협의결과 345kV 초고압 전력케이블 등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부지점용 불가 판정이 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공사가 지연된 것임.
- 다음으로 한남 빗물펌프장의 경우는 수방기간 중 기상변화에 따라서 공사가 중지되거나 관급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 공사지연 및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것임.
- 상수의 경우 착공 전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당인의 경우 유관기관의 부지점용에 대한 사업협의를 없이 설계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무책임적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한남의 경우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사전 계획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 사업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사전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여의천(서초구) 단면확장 및 보축공사’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본마을 지역의 수해피해 예방과 치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면확장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10억원 중 99.2%인 9억 9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 이는 제방보축구간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2017.12.18.에 완료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를 절차 및 방법 등) 3항에 의거 협의기간이 30일 이상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지출이 지연되어 발생된 것임.
  - 이처럼 감정평가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는 감정평가비만 예산 편성하고 공사비는 차후에 편성하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임.
- ‘새원천(소하천, 서초구) 하천정비(단면확장)’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 시설의 노후화 등을 고려한 새원천 하천정비 공사를 통해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8억원 중 97.9%인 7억 83만원을 사고이월함.
  - 사유는 토지주의 보상협의 반대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공사계약이 2017.11월에서야 체결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 전에 이해당사자와의 보상협의를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과감히 감액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 세 입 결 산

####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2017	791,041	73,804	864,845	911,802	893,960	17,842	400	17,442	98.0%
2016	781,882	49,794	831,676	892,204	875,412	16,792	288	16,504	98.1%
2015	727,016	82,691	809,708	898,706	880,327	18,379	839	17,540	98.0%

####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8,648억 45백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6,773억 94백만원,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553억 42백만원, 국고보조금이 33억 7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87억 37백만원이며,
  - 이 중 수납액은 8,939억 6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118억 2백만원 대비 98.0%이며, 미수납액은 178억 4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0%임.

#### 나) 세 수 추 계 (결산서 p.19~20, p.36~37)

-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세입과목으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적세외수입 중 하수도 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일반부담금, 지난연도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이 대표적임.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증감액 (b)-(a)	사유
경상적 세외수입					
하수도 사용료	632,495	623,706	611,293	-8,789	○ 예산 대비 전체 하수배출량(1,123백만 m <sup>3</sup> → 1,102백만 m <sup>3</sup> ) 감소
기타사용료	128	191	191	63	○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으로 추계
기타 사업수입	43,756	41,016	39,927	-2,740	○ 타시도 하수처리량 감소(74,424백만 m <sup>3</sup> → 70,961백만 m <sup>3</sup> )
공공예금이자수입	1,015	4,371	4,371	3,356	○ 전년도 순세계잉여금(236억원) 등 재정규모 증가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3,790	13,790	13,790	○ 2016년 서남물재생센터 하수도부지 매각비 (마곡지구 추가편입 국공유지 수용재결보상금) - 2017.1.20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2017.2.24 138억원 징수
자치단체간 부담금	1,561	1,269	1,269	-292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축소에 따라 고양시 시설분담금 감소
일반부담금	36,379	46,136	45,334	9,757	○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 등 하수도원인자 부담 부과대상 증가 - 제2 롯데월드 신축공사 준공(39억원), 서울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 (19억원)
과태료	21	119	34	98	○ 불특정 다수의 부정 면탈자에 대한 부과로 세수 추계 곤란
시도비 반환금	166	50	37	-116	○ 자치구에 보조한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비 집행잔액 감소
기타수입중 그외수입	7,616	8,909	8,886	1,293	○ 서남물재생센터 소화가스료 판매액 증가 (10억원→25억원)
지난년도 수입	9,599	16,036	12,620	6,437	○ 2015년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체납 이월액 규모가 증가하여 징수액 증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로 추계)
보조금					
국고보조금	3,372	3,372	3,372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54,933	78,484	78,484	23,551	○ 초과세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증가로 차액발생
전년도 이월사업비	0	73,804	73,804	73,804	

- 경상적 세외수입 중 ‘하수도 사용료’는 예산액 6,324억 95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6,237억 6백만원으로 그 차이는 87억 89백만원인데, 서울시는 그 주된 원인으로 당초 세수 추계시 예상배출량 보다 실제 하수배출량이 소폭(1.9%) 감소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임.
  - 각 업종별 하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는 갑작스러운 변동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추이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최근 수년간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기타사업수입’은 예산액 437억 56백만원 대비 27억 4천만원이 감소한 410억 16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차액 발생사유는 물재생센터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타시도 하수유입량이 전년 74,424백만 m<sup>3</sup>에 대비해 2017년도에 70,961백만 m<sup>3</sup>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예산액 0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37억 90백만원으로, 이는 2017.1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라 서남물재생센터 하수도부지 매각비(마곡지구 추가편입 국공유지 수용재결보상금)가 138억원 징수됨에 따른 것인데,
  - 수용재결 시점이 2017.1월인 점을 감안할 때 세입예산 추계시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일부만

이라도 편성했다면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음.

-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은 「하수도 사용조례」 제29조~제31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예산액 363억 79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461억 36백만원으로 97억 57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증가사유로는 제2롯데월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 부과대상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의 공사기간이 긴 대형 건축물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준공예정일자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예측이 어려웠다는 주장이나 이는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은 점용료, 변상금, 판매대금(하수 건조슬러지, 소화가스, 바이오가스), 반환금(공사비, 각종 수당 등), 불용품매각대금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구성되며, 예산액 76억 16백만원 대비 12억 93백만원이 증가한 89억 9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었는데, 이 또한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에 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다) 미수납액(결산서 p.19~20, p.36~37, p.262, p.266)**

- 미수납액 178억 42백만원 중 대부분은 하수도사용료로 당해연도 미수납액 144억 25백만원(2016년 127억 78백만원)과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 34억 17백만원(2016년 40억 15백만원)임.

- 이는 2016년도 127억 78백만원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12.8%)한 것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차년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고질적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초기체납을 가급적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회계 수납·관리체계 개선 및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환경을 조성하여 미수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17,842,135
	결손처분	400,361
	무재산	0
	행방불명	0
	시효소멸	400,361
	공매시배당무	0
	기타	0
	차년도 이월액	17,441,774
	징수유예	
	행방불명	177,898
	무재산	1,974,249
	납세태만	14,880,10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219,427
	폐업 또는 부도	132,274
	채무자회생법에의한 유예	16,135
	자금압박	41,684

- 한편, 하수도사용료의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누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981건에 25억 4천만원이며, 이 중 3백만원 이상의 고액채납 금액이 12억 78백만원(50.3%)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액채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임.

[표] 1백만원 이상 고액채납자 누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건 수	금 액
계	981	2,540
1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798	1,262
300만원이상 ~ 600만원미만	120	484
600만원이상 ~ 1,000만원미만	35	263
1,000만원이상	28	531



## 2) 세 출 결 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791,041	73,804	-	1,246 (-1,246)	3,000 (-3,000)	-	864,845	672,212				192,633 (22.3%)
2016	781,882	49,794	-	188 (-188)	66 (-66)	-	831,676	722,576	73,804	47,214	26,590	35,296 (4.2%)
2015	727,016	82,692	-	300 (-300)	116 (-116)	-	809,708	720,049	49,794	43,862	5,932	39,865 (4.9%)

#### 가) 개 요

- 당초예산액 7,910억 4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38억 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648억 45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722억 12백만원이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는데, 이는 2018.01.01.자로 하수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예산의 이월이 불가했음에 따른 것임.

#### 나) 집행잔액(불용액)(p.63~77, p.108~156)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불용율 30% 이상 사업(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59건에 해당됨.([표] 참고)

[표]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물재생계획과	하수도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사용료 납부	9	0	9	100.0%
2	물재생계획과	탄천 처리구역 우수토실 개선	50	0	50	100.0%
3	물재생계획과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130,600	83,898	46,702	35.8%
4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개량사업 부대비	30	8	22	73.3%
5	물재생계획과	신설동 396-12주변 하수관로 개량	1,200	789	411	34.3%
6	물재생계획과	삼양로 155길 41 주변 하수관로 개량	400	227	173	43.3%
7	물재생계획과	수색동 308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구간내 노후하수관로 개량	1,000	0	1,000	100.0%
8	물재생계획과	동교동 삼거리 하수관로 개량	300	202	98	32.7%
9	물재생계획과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	301	100	201	66.8%
10	물재생계획과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8,526	5,930	2,596	30.4%
11	물재생계획과	신길동 362-22~276-77주변 하수관로 개량	900	629	271	30.1%
12	물재생계획과	당산로4가 38-1~80주변 하수관로 개량	600	340	260	43.3%
13	물재생계획과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하수관로) 단기대책	4,829	227	4,602	95.3%
14	물재생계획과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배수구역경계조정)	8,924	1,650	7,274	81.5%
15	물재생계획과	석촌동 234-224간 하수관로 개량	800	297	503	62.9%
16	물재생계획과	창신승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노후 하수관로 종합정비	530	325	205	38.7%
17	물재생계획과	군자-2구역 소블럭 정비 시범사업	100	0	100	100.0%
18	물재생계획과	평창동 34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	1,000	379	621	62.1%
19	물재생계획과	평창동 20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	1,500	1,043	457	30.5%
20	물재생계획과	장원중학교 일대 원형관로 보수	500	299	201	40.2%
21	물재생계획과	행당동 138번지 주변 원형관로 보수	400	258	142	35.5%
22	물재생계획과	뚝섬로 413주변 원형관로 보수	300	150	150	50.0%
23	물재생계획과	구의동 201-2~광장사거리 주변 원형관로 보수	500	239	261	52.2%
24	물재생계획과	중곡동 국립정신센터 주변 원형관로 보수	300	152	148	49.3%
25	물재생계획과	정릉로6가길 44 주변 원형관로 보수	1,100	642	458	41.6%
26	물재생계획과	미아역주변 원형관로 보수	400	234	166	41.5%
27	물재생계획과	미아동 124-2 주변 원형관로 보수	300	194	106	35.3%
28	물재생계획과	번동초등학교 주변 원형관로 보수	300	97	203	67.7%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29	물재생계획과	불광동 476-4~447-1 주변 원형관로 보수	600	266	334	55.7%
30	물재생계획과	공덕동 467-2 주변 원형관로 보수	600	0	600	100.0%
31	물재생계획과	중앙로 58 주변 원형관로 보수	1,200	610	590	49.2%
32	물재생계획과	개봉동 63-35 주변 원형관로 보수	1,600	1,054	546	34.1%
33	물재생계획과	동작동 93-7~97-1 일대 원형관로 보수	1,100	0	1,100	100.0%
34	물재생계획과	사당로 23길 190-13일대 원형관로 보수	500	0	500	100.0%
35	물재생계획과	방배로 1514 일대 원형관로 보수	1,200	521	679	56.6%
36	물재생계획과	서초중앙로 215 일대 원형관로 보수	700	69	631	90.1%
37	물재생계획과	내곡동 1번지 일대 원형관로 보수	1,750	0	1,750	100.0%
38	물재생계획과	마천동 159-~13-6 주변 원형관로 보수	500	211	289	57.8%
39	물재생계획과	방이동 180-6~180 주변 원형관로 보수	500	273	227	45.4%
40	물재생계획과	석촌동 277-3~295-5 주변 원형관로 보수	500	330	170	34.0%
41	물재생계획과	가락동 175-14~176간의 1개소 원형관로 보수	600	60	540	90.0%
42	물재생계획과	예비비	700	0	700	100.0%
43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20,436	12,062	8,374	41.0%
44	물재생시설과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3,457	11,184	12,272	52.3%
45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10,132	5,353	4,778	47.2%
46	물재생시설과	차집관로 성능개선	4,034	3,427	607	15.0%
47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 시설 설치	61,950	1,078	60,872	98.3%
48	물재생시설과	탄천 및 서남 처리구역 차집관로 사각박스 내부 점검 및 정비	1,500	696	804	53.6%
49	물재생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36,637	35,377	1,260	3.4%
50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73,242	72,794	448	0.6%
51	물재생시설과	구로구 향동지역 하수처리비 부담금	440	253	187	42.5%
52	물재생시설과	마곡 재이용수 공급 시설 누수복구	28	0	28	100.0%
53	중량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43,346	41,218	2,128	5%
54	중량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	13,403	12,555	848	6%
55	중량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유지보수	14,975	9,302	5,673	38%
56	중량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오니처리유지보수	5,408	4,840	568	11%
57	중량물재생센터	1처리장 수처리 위탁관리	1,500	-	1,500	100%
58	난지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8,975	6,404	2,571	28.6%
59	난지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	11,145	10,210	935	8.4%

- ‘탄천 처리구역 우수토실 개선’ 외 12개 사업(상기 [표]에서 3, 9, 10, 13, 14, 17, 43, 44, 45, 47, 57, 83번 사업)은 당초 사고이월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8.01.01.자로 하수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예산의 이월이 불가하게 되어 이월 소요예산을 차년도 예산에 신규편성키로 하고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한 것임.
- ‘신설동 396-12 주변 하수관로 개량’ 외 37개 사업(상기 [표]에서 6, 11, 12, 15, 18, 19, 21~41사업)은 노후된 하수관 개량으로 도로함몰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후된 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 동 사업들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에 내부위원 3명, 자치구 1명, 외부위원 3명을 검토위원으로 한 사전 검토회의(물재생계획과-4191호, ‘17.3.24.)를 거쳐 사업구간이 불일치하거나, 공법이 부적절한 경우, 노후관 상태가 양호하여 일부 준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사업물량을 각 사업별로 조정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한 것임.
  - 사전 검토를 통해 실행가능하고 꼭 필요한 사업규모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나, 2017회계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 이러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다) 예산전용(결산서 p.172)

- 금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성과상여금, 공공운영비, 총 2건 30억 35만원을 전용하였음.

[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전용 내역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유
					감액	증액		
2건				76,718,304	3,000,350	3,000,350		
1	물재생계획과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3,300,258	350		2017.04.05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지급액 증가 요인 발생
			303-02 성과상여금	176,031		350		
2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307-05 민간위탁금	41,393,015	3,000,000		2017.11.06	서남물재생센터 전력사용량 및 슬러지발생량의 증가로 공공운영비 예산이 약 32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 내 민간위탁금 불용 예정액 30억원을 전용하여 전기요금 및 매립지반입수수료로 납부하고자 함
			201-02 공공운영비	31,849,000		3,000,000		

- 이 중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전년대비 전력사용량 및 슬러지발생량의 증가<sup>10)</sup>로 전기요금, 매립지반입수수료

10) 1. 전력사용량 증가

- 전년도 대비 하수유입량 증가와 유입수질 상승으로 송풍기, 유입펌프 전력사용량 7.6% 증가 : 유입하수량 3% 증가('16년 378,097천m<sup>3</sup> → '17년 389,600천m<sup>3</sup>) 전력사용량 7.6% 증가('16년 101,178Mwh → '17년 108,829Mwh)

2. 슬러지발생량 증가에 따른 매립지 반입량 증가

- 유입수질 상승에 따른 약품(PAC) 사용량 증가와 정화·분뇨·음폐수 반입량 증가로 슬러지발생량 18% 증가('16년 501톤/일 → '17년 618톤/일)

등의 공공운영비가 약 32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예산 414억원 중 불용예정액 30억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것임.

- 슬러지 발생량 증가여부를 예산편성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약 32억원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예측치가 너무나 많이 벗어났다는 점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세심한 예측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음.

라)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마) 예산변경(결산서 p.180)

- 금회 예산의 변경은 6건에 12억 4,630만원으로
  - ‘오류4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의 2건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는 시설비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은 재료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 하였음.

[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6건				84,266,392	1,246,300	1,246,300		
1	물재생 계획과	오류4 배수 분구 하수관 로 종합정비	401-01 시설비	4,730,000	49,300		2017-12 -12	건설사업관리 용 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 정분 반영을 위해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
			401-02 감리비	270,000		49,300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2	물재생 시설과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 처리시설 설 치	401-01 시설비	13,155,000	255,000		2017-07 -27	슬러지건조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감리용역을 시 행코자 변경
			401-02 감리비					
3	물재생 시설과	중량물재생 센터 시설현 대화	401-01 시설비	22,625,000	388,000		2017-10 -25	종합시운전 재수 행 등에 따른 감 리비 및 공사감독 추가 확보
			401-02 감리비			800,000		
4	물재생 시설과	중량물재생 센터 시설현 대화	401-01 시설비	22,237,000	4,000		2017-10 -25	종합시운전 재수 행 등에 따른 감 리비 및 공사감독 여비 추가 확보
			401-03 시설부대 비			28,000		
5	물재생 시설과	차집관로 성 능개선	401-01 시설비	1,900,000	50,000		2017-07 -31	감리 발주로 인한 감리비 편성(개봉 1유수지)
			401-02 감리비					
6	난지물 재생센 터	난지물재생 센터 운영	206-01 재료비	3,834,501	500,000		2017-12 -04	공공운영비 폐기 물처리비, 전력요 금 예산부족으로 재료비 예산 일부 변경사용
			201-02 공공운영 비			14,686,891		

○ 이 중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 처리시설 설치’, ‘차집관로 성능개선’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리용역을 발주코자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였는데,

- 이는 당초 의회 예산승인을 받을 당시 감리비 항목이 없었으나 예산변경을 통해 감리비 항목을 새로이 신설하여 사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 사전승인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사료되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바) 예비비

○ 예산의 예비비는 없음.

#### 사) 차년도 사고이월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 없음.

## 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B/A)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2017	28,594	1,151	29,745	29,579	29,579	-	-	-	100.0
2016	30,901	-	30,901	30,813	30,813	-	-	-	100.0
2015	20,609	-	20,609	21,506	21,506	-	-	-	100

#### 가) 개요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285억 94백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정상적세외수입이 2천 7백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264억 9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이 20억 74백만원이며, 수납액은 295억 7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 나) 세수추계 (결산서 p.21, p.38)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297억 45백만원 대비 99.4%로 295억 79백만원이며, 예산현액과 1억 66백만원 (0.5%)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회(0.3%, 87백만원) 대비 세수추계의 차가 다소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큰 세입과목으로는 ‘전년도 이월금<sup>11)</sup>’이 대표적이며, 이는 전년도 강동구, 송파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사업의 사고이월액 11억 51백만원이 발생한 것에 기인함.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사 유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26	202	202	176	한강수계기금 전입금 조기배정으로 인한 공공이자 수입 증대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		6	6	6	2016년도 강동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사업비 정산차액 납부 등 (한전 배전선로 이설부담금 환급)
보조금					
기금	26,493	25,841	25,841	-652	송파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사업비 조정 등 국비지원액 축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등	2,074	2,378	2,378	304	한강수계기금 정산지연으로 국비반납금 집행잔액 증가
전년도 이월금		1,151	1,151	1,151	이월금 세입 미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여 처리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한강수계 관리기금전입금)’은 예산액 264억 93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6억 52백만원 감소한 258억 41백만원인데,
- 주요사유는 송파구 하수관로 개량공사의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국비지원금이 축소되어 전입금이 감소(6억 52백만원)되어 발생한 것임.

11)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결산결과 초과징수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합계에서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뺀 금액

## 2) 세 출 결 산

###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7	28,594	1,151	-		7 (-7)	-	29,745	24,600	1,868		1,868	3,277 (11.0%)
2016	30,901	-	-	1 (-1)	1 (-1)	-	30,901	27,283	1,151	140	1,011	2,467 (8.0%)
2015	20,609	-	-	-	1 (-1)	-	20,609	19,202	-	-	-	1,407 (6.8%)

#### 가) 개 요

- 예산액은 285억 94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46억이고 이월액은 18억 68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32억 77백만원임.

####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78~79, p.161~166)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 등 4건이 이에 해당([표] 참고)되는데, 이는 집행잔액에 따른 것임,

[표] 불용률 30%이상 사업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1	물순환정책과	환경기초시설설치(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250	9,772	610	5.0%
2	물순환정책과	잠실상수원 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702	416	286	40.7%
3	물순환정책과	예비비	1,333	-	1,333	100.0%
4	물순환정책과	반환금및기타(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700	130	570	81.4%

- 이 중 ‘잠실상수원 관리’ 사업은 잠실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순찰 및 단속, 수질오염물질 조기 수거 등 상수원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7억 2백만원 중 40.7%인 2억 86백만원이 불용되었는데,
  - 동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40.7%에 달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상황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이 다소 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사업 추진 시에는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결산서 p.173)**

- 예산전용은 총 2건에 7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7백만원을 전용하였음.([표] 참조)

[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변경일자	사유
				감액	증액		
2건			1,440	7	7		
물순환정책과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696	3	-	2017-04-07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인력운영비중 한강사업본부(광나루안내센터) 청원경찰 성과상여금부족분에 대한 예산 전용
		303-02 성과상여금	34	-	3		
물순환정책과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693	4	-	2017-09-29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인력운영비중 한강사업본부(광나루안내센터)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전용
		204-02 직급보조비	17	-	4		

- 이는 한강사업본부 광나루센터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 및 직급보조비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상여금의 경우 광나루안내센터 청원경찰의 직급상승 및 인사이동,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성과상여금 지출액이 증가<sup>12)</sup>하였고, 직급보조비의 경우 2017회계년도 예산 책정 시 직급변동 및 보조비인상분 미반영<sup>13)</sup>에 따른 것임.

**라) 이체·변경사용**

- 예산의 이체 및 변경은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387)**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1건 18억 68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297억 45백만원 대비 6.3%에 해당됨.

[표] 사고이월 30%이상 사업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1	하천관리과	환경기초 시설설치	12,250	1,868	-	15.3%	상수도 배관 이설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

12) - 변경 전('16.3) : 경사 11명, 경장 2명  
 - 변경 후('17.4) : 경위 3명, 경사 6명, 순경 4명

13) - 직급변동 : 경사 2, 경장 9, 순경 2 → 경위 4, 경사4, 경장 1, 순경 4  
 - 직급보조비 인상(경장, 순경) : 105,000원 → 125,000원

- 사고이월이 발생한 ‘환경기초 시설설치’ 사업은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 등을 정비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2억 5천만원 중 15.3%인 18억 68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사유는 강동대로 하수암거 공사노선 일부가 수도관 공사구간과 중첩되어 수도관 선 공사 후 공사진행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암사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의 지장물 이설 지연과 영업피해 보상 민원 등으로 이 역시 공사가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함.
- 이는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후속사업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다 하겠으며, 또한, 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제 지하구조물 세부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성급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추후에는 선행사업 검토, 지하 지장물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마.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수입								지출						
	계	전년도이월액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사업비등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다음연도이월액
2017	415,089	191	100,500	2,174	6,166	259,297	46,666	95	415,089	23,239	389,806			4	2,040
2016	299,777	104	90,707	-	4,369	194,526	10,000	71	299,777	40,285	259,297	-	-	4	191
2015	236,962	3,636	86,532	-	4,418	132,359	10,000	17	236,963	42,333	194,526	-	-	-	104

\* 관련 용어

수입	전입금 (법정적립액)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조금	중앙부처에서 기금으로 교부된 금액 (소방방재청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복구 국비분담금)
	이자수입	시금고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공공예금, 정기예금 등)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이전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당해연도 회계로 이전하는 금액
	예탁금 원금회수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여유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하는 금액
	기타	기타잡수입(과년도 회계 정산 반납금)
지출	고유목적사업비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3,6,12개월)로 금융기관(시금고)에 예치한 모든 금액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 자금
	예수금원리금상환	타 회계 및 기금(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기타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 등

※ 의무적립액 :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도록 된 금액 (2016년도말 의무적립액 : 188,688백만원)

## 가) 개 요

- 복지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소관 재난관리기금<sup>14)</sup>은 재난의 예방과 비상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해구호법 제 1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설치되었으며, 당초 재해계정, 구호계정, 재난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재해, 재난)으로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이 중 재난계정이 물순환안전국 소관임.

## 나) 기금 총괄(결산서 p.198)

-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sup>15)</sup>은 전년도말 조성액 3,061억 54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sup>16)</sup> 1,089억 35백만원과 사용액<sup>17)</sup> 232억 43백만원의 차를 합산한 3,918억 46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 856억 92백만원 흑자운영 한 것으로 나타남.([표] 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06,154	85,692	108,935	23,243	391,846

14)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재원: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5) 당해연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6) 당해연도 조성액 = 자치단체 출연금+이자수입+기타 (예탁금상환, 예치금회수 제외)

17) 당해연도 사용액 = 목적사업비

- 흑자운영 사유는 보통세 수입 증가에 따른 전입금 증가와 2017년에 비교적 수해피해가 작아 응급복구비 사용지출이 적었기 때문임.

다) 기금 수입결산(결산서 p.193-194)

-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 4,095억 26백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억 91백만원을 포함한 수입계획현액이 4,097억 17백만원이었으나, 4,150억 8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표] 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409,526	409,526	191	409,717	415,089	415,089

- 여기서, 징수결정액(수납액)이 수입계획현액보다 53억 72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한 것과 이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라) 기금지출 결산(결산서 p.195~196)

-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계획 4,095억 26백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억 91백만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4,097억 17백 만원이었으나 4,130억 49백 만원을 지출하고 20억 40백 만원을 이월시킴.([표]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409,526	409,526	191	409,717	413,049	2,040

- 금회 재난관리기금의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심의금액 44억원 23백만원 대비 46%인 20억 40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응급복구 사업 3건에서 발생하였음.([표] 참조)

[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재배정 부 서	심의금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3건			4,423	2,040 (46%)	
1	서울동물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조류격리사 설치 공사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2,400	478 (20%)	조류격리사 공사 부지 내 암석 제거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18.3월까지 기간 연장
2	성내천 고지배수로 긴급보수 보강 및 준설공사	송파구 (치수과)	1,873	1,412 (75%)	우기철 공사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3	잠실빗물펌프장 개거형 강제 배수로 구조물 긴급복구 정비	송파구 (치수과)	150	150 (100%)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갈대식재 사업으로 인한 공사중단 및 동절기 공사기간 부족으로 기간 연장

- 먼저, ‘서울동물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조류격리사 설치 공사’는 AI 재발방지 기반시설(조류사 개선 및 격리사 설치)을 조성하여 동물원 안전을 강화하고 희귀 멸종위기 조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억원 중 20%인 4억 78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그 사유는 실시설계가 늦어짐에 따라 2017.9월이 되어서야 공사가 발주(당초 계획 2017.5월)되었고, 조류격리사 공사 부지 내 암석 발생, 철골 및 지장수목 증가, 동절기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8.3월(기존 2017.12월)로 공사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기금의 성격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수시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없을 수는 없으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입각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성내천 고지배수로 긴급보수보강 및 준설공사’는 올림픽로 성내교 부근에 동공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복구를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73백만원 중 75%인 14억 12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그 사유는 공사 중 시기가 우기철에 접어들어 추가 작업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고지배수로 양수작업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근 파크리오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이처럼 민원발생 여지가 있다면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잠실빗물펌프장 개거형 강제 배수로 구조물 긴급복구 정비’는 잠실빗물펌프장 내 파손된 치수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천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음.
- 동 사업은 2017.9월 예산을 배정받아 2017.11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사업특성(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및 갈대 식재) 상 하루 평균기온이 4℃이하의 조건에서는 콘크리트의 동결 우려로 하자 발생 위험이 크며, 동절기에는 갈대 식재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역기간을 당초 2017.12.31.에서 2018.04.30.으로 연장함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소관실국 (부서명)
1	관급자재 구매시 적정한 예비가격 산정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급자재 구매시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예비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고</li> <li>○ 낙찰차액을 내부 품의만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li> </ul>	하천관리과
2	사업계획 수립시 대상부지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앞서 해당 사업 부지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li> </ul>	하천관리과
3	결산서 작성 오류 예방 노력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현액 전액 불용된 사업(통계목)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작성되어 있음. 향후 결산서 첨부서류의 내용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권고함</li> </ul>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 42. 관급자재 구매시 적정한 예비가격 산정 촉구

### 가. 현황 및 문제점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에서는 “2010년, 2011년 등 집중호우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양천 신월, 강서 화곡의 침수저감을 위한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을 위한 신월홍보관 및 목동1펌프장 건립공사의 일부인 배수펌프 구매설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 사업내용

- 사업명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위치 : 양천구 신월1동 234-11 ~ 목동 빗물펌프장 일대
- 예비가격 : 1,731,497,300원
- 낙찰가격 : 660,201,370원
- 낙찰차액 : 1,071,295,930원

공사를 시행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는 배수펌프 구매설치 예비가격을 1,731,497,300원으로 산정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660,201,37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예비가격을 과도하게 산정함에 따라 1,071,295,930원에 이르는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에서는 내부 품의를 통해 1,071,295,930원의 낙찰차액을 2018회계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제진기를 구매하는 비용(1,339,019,300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 **나. 시정권고**

관급자재 구매 시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물품구매 예비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낙찰차액을 내부 품의만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3. 사업계획 수립시 대상부지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 촉구

### 가. 현황 및 문제점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에서는 광장동 정보화 도서관 앞 광나루터 주변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과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나루터 주변 수변무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광나루터(광진구) 주변 수변무대 설치’의 사업개요와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요

- 위 치 : 한강 수면(광진구 광장동 정보화도서관 앞 광나루터)
- 사업내용 : 수변무대 설치(B=27m, L=57m)
- 사 업 비 : 21억원(2015년 1억, 2016년 20억: 명시이월)

#### 추진경위

- 2016. 6 : 하천 점용허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전협의(6.1, 6.13)
  -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에 긍정적 의견
- 2016.6.22. : 설치장소 적정성 논의(한강유역환경청, 물순환정책과, 광진구 환경과)
  -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목적에 적합한 시설물로 보기는 어려움

- 2016.7.27.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광진구)
  - 광나루터의 역사성 재현 및 인근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와 연계시에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 있음
  -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계획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장기적인 한강 종합계획시 주변 계획과 연계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시행함이 타당
- 2017.03. : 광나루터 수변무대 설치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한강유역환경청, 광진구, 문종철시의원, 서울시 관련부서4)
  - 한강유역환경청에 수변무대 설치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요청
  - 수면에 어려울 경우 둔치 및 제방사면을 활용한 공연무대 설치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 2017.04. : 제방사면 활용 설치안에 대한 현장 보고(하천관리과 → 문종철 의원)
  - 제방사면과 자전거도로를 활용(정보화도서관 인접)한 무대설치 협의
  - 정보화 도서관 앞으로 소음기준은 50dB이하(300m 이격필요)

‘광나루터(광진구) 주변 수변무대 설치’ 사업은 예정 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수변무대 설치가 불가함을 확인하고, 대체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나. 시정권고**

‘광나루터(광진구) 주변 수변무대 설치’ 사업은 예정 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변무대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대체 부지마저 찾지 못해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앞서 해당 사업 부지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9. 결산서 작성 오류 예방 노력 촉구

### 가. 현황 및 문제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 설명 및 사례

1.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또는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2. 예산절감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3. 예산집행잔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 보조금집행잔액 : 보조금집행현황의 보조금집행 잔액으로 표기(국비·시도비)
5.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그러나 각 실·본부·국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구분을 주의 깊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집행잔액’ 항목은 그 성격상 불용률이 100%인 사업에서는 발생할 수 없음에도 해당 원인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사업들이 존재하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전액 불용된 사업(통계목)을 예산집행잔액으로 작성한 사례

(단위 : 백만원)

실국명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 집행잔액	집행잔액원인별 금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 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서울혁신 기획관	사회혁신담 당관	서울혁신파크 운영	국제부담 금	200	0	0	200	0	0
서울혁신 기획관	사회혁신담 당관	공유서울 확산	외빈초청 여비	5	0	0	5	0	0
기획조정 실	대외협력담 당관	지역희망박람회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관리 비	1	0	0	1	0	0
기획조정 실	재정관리담 당관	시 재정간편화 추진 및 정보제공	사무관리 비	50	0	0	50	0	0
평생교육 국	평생교육과	서울자유시민 대학 운영	시설부대 비	6	0	0	6	0	0
경제진흥 본부	디지털창업 과	신지식산업센 터 리모델링	시설부대 비	3	0	0	3	0	0
기후환경 본부	생활환경과	음폐수 처리 자치구(강서, 성동)보조사업	사무관리 비	10	0	0	10	0	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감리비	5	0	0	5	0	0
문화본부	한양도성도 감	한양도성 단절구간 잇기	감리비	10	0	0	10	0	0
문화본부	한양도성도 감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국비)	감리비	10	0	0	3	7	0
문화본부	한양도성도 감	탕춘대성 보존관리	시설부대 비	0.3	0	0	0.3	0	0
문화본부	한양도성도 감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18	0	0	18	0	0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민간인국 외여비	10	0	0	10	0	0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자산및물 품취득비	3	0	0	3	0	0

실국명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 집행잔액	집행잔액원인별 금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 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문화본부	박물관과	(가칭)시민생활사. 로봇박물관 전시유물자료 확보	기타보상금	50	0	0	50	0	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재료비	78	0	0	78	0	0
푸른도시국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세곡공원 운영 및 보수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2	0	0	12	0	0
푸른도시국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세곡공원 운영 및 보수	기타보상금	3	0	0	3	0	0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노을공원 공유서가 설치(주민참여)	기타보상금	10	0	0	10	0	0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총무과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	0	0	4	0	0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총무과	서울랜드 및 곤돌라 기본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30	0	0	30	0	0
문화본부	박물관과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51	0	0	51	0	0
문화본부	박물관과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기타보상금	10	0	0	10	0	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시설부대비	8	0	0	8	0	0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시민참여관 건립·운영	시설부대비	5	0	0	5	0	0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창동상계 동서간 연계 교량 건설사업	시설비	309	300	0	9	0	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감리비	255	0	0	255	0	0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결산서의 작성)에 따르면 결산서는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2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의 구성항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발생원인에 따라 성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까닭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함목적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일 것이며 그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나. 시정권고**

서울시는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서울시의회에 결산(안)을 제출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해당 오류를 시정하고, 향후 서울시 전부서에서는 결산서 첨부서류의 내용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